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141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 202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12.년경까지 동거하면서 연인으로 함께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6.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가게 운영을 도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6.부터 2018. 12.까지 피고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루 14시간씩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합계액 중 40,66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연인으로서 도와준 것일 뿐,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의 노무비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가를 전제로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노무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생활공동체로서 사용종속의 근로관계라 할 수 없어 법 적용이 제외됨’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을 제1호증).

나.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가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 등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906(본소), 2019가합987(반소)]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을 동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아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원고 아들이 사업자 명의 및 임대차계약 명의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그 외 자금 출자, 거래처와의 연락, 세무사무소 연락, 세금 납부, 영업, 판매 등을 한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갑 제2호증).

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8(E, F, G, H 증인진술서)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이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로 제공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것인지(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혹은 가족으로서 도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